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기획, 원무) 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55호(2015.8.28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54호, 2015.08.28.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붙임 :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406 (2015.08.28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

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